
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정 : 2016. 05. 25

개정 : 2021. 03. 25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.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규칙 등(이하 “관련법규” 라 한다)과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. 운용보수는 운용기간 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 말하고,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산정된 방식에 따라 받는 금전을 말한다.
2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3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5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6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7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

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8. 투자일임.자문수수료 : 투자일임.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.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집합투자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 절차)

- ①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투자일임.자문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)

투자일임.자문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수료 지급주기, 지급시한, 수수료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일임.자문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일임.자문수수료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.자문과 관련된 투자결과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.자문수수료(이하 “기본수수료”) 외에 투자결과와 연동된 성과보수(이하 “성과수수료”)를 추가로 받거나,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것을 약정하는 투자일임.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수수료는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의거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(설명의무)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투자일임업, 투자자문업의 금융위원회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.